

소규모펀드 수시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소규모펀드 비율 공시

보고서코드	회사코드	공모추가형 펀드수	소규모 펀드수	부실자산 펀드수	증투법 펀드 중 (구)개인연금펀드수	소규모펀드 비율	제출기준일
GSMC	A01025	33	8	5	0	10.71	2017-11-30

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